

- 2022학년도 제18차 -
규정심의위원회 심의 안건

2023. 2. 2.(목), 14:00

<심의 안건>

「생활관규정」 개정(안)에 관한 건 외



우석대학교
WOOSUK UNIVERSITY

기획예산팀

규 정 입 안 서

규정명	「생활관규정」		
입안형태	☐ 제 정		

「직제규정」 개정(안) 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(안)																								
제2조(용어 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(개정 2018.10.25) 1. “생활관”이란 전주캠퍼스 우석헌1관, 우석헌2관, 우석헌3관, 우석헌4관, 진천캠퍼스 우석헌을 말한다. 2. “관생”이란 생활관에 입사한 학생을 말한다. 3. “생활관비”란 관리비, 관생회비, <u>키보증금</u>, 식비를 포함하여 말한다.	제2조(용어 정의) (현행과 같음) 1. (현행과 같음) 2. (현행과 같음) 3. “생활관비”란 관리비, 관생회비, <u>보증금</u>, 식비를 포함하여 말한다.																								
제16조(관리비 환불) ①퇴사하는 자의 관리비 환불기준은 다음과 같다. (개정 2018.10.25., 2022.6.28.)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사유발생시기</th>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환 불 금 액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입학일 또는 당해학기 개시일까지</td><td>관리비 전액</td></tr> <tr> <td>학기 개시일부터 30일에 해당하는 날까지</td><td>관리비의 3분의 2 해당액</td></tr> <tr> <td>학기 개시일부터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</td><td>관리비의 3분의 1 해당액</td></tr> <tr> <td>학기 개시일에서 <u>60일이</u> 지난 날</td><td><u>반환하지 않음</u></td>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(신설)</u>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(신설)</u></td></tr> </tbody> </table> ②방학 중 입사하여 사용한 자가 조기 퇴사하는 경우 환불금은 <u>잔여일에 대하여 일일계산</u>한 금액으로 한다. (제정 2007.9.27, 개정 2010.10.7.) <u>③ (항 신설)</u>	사유발생시기	환 불 금 액	입학일 또는 당해학기 개시일까지	관리비 전액	학기 개시일부터 30일에 해당하는 날까지	관리비의 3분의 2 해당액	학기 개시일부터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	관리비의 3분의 1 해당액	학기 개시일에서 <u>60일이</u> 지난 날	<u>반환하지 않음</u>	<u>(신설)</u>	<u>(신설)</u>	제16조(관리비 환불) ①퇴사하는 자의 관리비 환불기준은 다음과 같다. (개정 2018.10.25., 2022.6.28.)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사유발생시기</th>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환 불 금 액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입학일 또는 당해학기 개시일까지</td><td>관리비 전액</td></tr> <tr> <td>학기 개시일부터 30일에 해당하는 날까지</td><td>관리비의 3분의 2 해당액</td></tr> <tr> <td>학기 개시일부터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</td><td>관리비의 3분의 1 해당액</td></tr> <tr> <td><u>학기 개시일부터 60일이 지난 날부터 85일까지</u></td><td><u>관리비의 4분의 1 해당액</u></td></tr> <tr> <td><u>학기 개시일에서 85일이 지난 날</u></td><td><u>반환하지 않음</u></td></tr> </tbody> </table> ②방학 중 입사하여 사용한 자가 조기 퇴사하는 경우 환불금은 <u>잔여관리비의 10%를 공제</u>한 금액으로 한다. (제정 2007.9.27, 개정 2010.10.7.) <u>③강제퇴사하는 자의 관리비 환불금은 잔여관리비의 30%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. 단 학기 개시일에서 85일 후에는 반환하지 않음</u>	사유발생시기	환 불 금 액	입학일 또는 당해학기 개시일까지	관리비 전액	학기 개시일부터 30일에 해당하는 날까지	관리비의 3분의 2 해당액	학기 개시일부터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	관리비의 3분의 1 해당액	<u>학기 개시일부터 60일이 지난 날부터 85일까지</u>	<u>관리비의 4분의 1 해당액</u>	<u>학기 개시일에서 85일이 지난 날</u>	<u>반환하지 않음</u>
사유발생시기	환 불 금 액																								
입학일 또는 당해학기 개시일까지	관리비 전액																								
학기 개시일부터 30일에 해당하는 날까지	관리비의 3분의 2 해당액																								
학기 개시일부터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	관리비의 3분의 1 해당액																								
학기 개시일에서 <u>60일이</u> 지난 날	<u>반환하지 않음</u>																								
<u>(신설)</u>	<u>(신설)</u>																								
사유발생시기	환 불 금 액																								
입학일 또는 당해학기 개시일까지	관리비 전액																								
학기 개시일부터 30일에 해당하는 날까지	관리비의 3분의 2 해당액																								
학기 개시일부터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	관리비의 3분의 1 해당액																								
<u>학기 개시일부터 60일이 지난 날부터 85일까지</u>	<u>관리비의 4분의 1 해당액</u>																								
<u>학기 개시일에서 85일이 지난 날</u>	<u>반환하지 않음</u>																								
<u>(신설)</u>	<u>부 칙</u> <u>이 규정은 2023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.</u>																								

규 정 입 안 서

규정명	「대학원 학칙」		
입안형태	☐ 제 정		

「대학원 학칙」 개정(안)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(안)
<u>(신설)</u>	<u>부 칙</u> ①이 학칙은 2023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. ②(학과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) 이 개정 학 칙 시행 당시 석사과정 교육학과(인공지능) 재적 생은 변경된 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. (신설 <u>2023.00.00.)</u>

규 정 입 안 서

규정명	「자율학기제운영규정」		
입안형태	☐ 제 정	☒ 개 정	☐ 폐 지
소관부서	학사관리팀	관련부서	해당 없음
부서간 협의 결과	• 해당 없음		
대학평의위원회	• 해당 없음		
입안사유 (추진배경)	• 자율학기제운영위원회 심의에 따른 규정 개정을 통해 효율적 운영을 하고자 함		
관련근거 (관계법령)	•		
주요내용 (제개정내용)	• 최대 신청 학점 조정 - 최대 15학점 이상에서 9학점으로 축소 조정		
기대효과	• 자율학기제 운영 개선 및 체계적 운영		
구성원 참여소통을 위한 의견수렴 (공청회, 설명회, 의견조회 등)	가. 의견수렴 유무	해당사항 없음(●) 해당사항 있음()	
	나. 공청회 및 공고기간 (포털 및 홈페이지)	해당 없음	
	다. 의견제출 유무	해당사항 없음(●) 해당사항 있음()	
	라. 의견수렴 반영사항	해당 없음	
첨부자료	1. 「자율학기제운영규정」 규정입안서 및 신·구조문대비표 1부. 끝.		

「자율학기제운영규정」 개정(안)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(안)
제10조(학점인정 범위 및 성적) ①자율학기제 학점인정을 통한 학수구분은 교양, 전공, 자유선택 등으로 인정할 수 있다. ②인정학점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. 1. 학점인정의 범위는 1학기 최소 3학점 최대 <u>18</u> 학점으로 한다. 2. 자율학기로 취득할 수 있는 총 학점은 <u>36학점</u> 을 초과할 수 없다. ③성적표기는 P/F로 표시한다.	제10조(학점인정 범위 및 성적) ①~② (현행과 같음) 1. 학점인정의 범위는 1학기 최소 3학점 최대 <u>9</u> 학점으로 한다. 2. 자율학기로 취득할 수 있는 총 학점은 <u>18학점</u> 을 초과할 수 없다. ③ (현행과 같음)
<u>(신설)</u>	<u>부 칙</u> <u>이 규정은 2023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.</u>

【별표 5】

호봉제전환임용 평가항목 및 배점

평가구분	항목	내용	배점	방법
정량 평가	학과	최근 3년간 학과의 신입생 충원율(학과평가 결과 활용)	30	A~E
	지속	최근 3년간 학과의 재학생 충원율(학과평가 결과 활용)	15	A~E
	가능성	최근 3년간 학과의 취업률(학과평가 결과 활용)	15	A~E
	소계		60	
정성 (면접) 평가	학과 공헌도	학과 업무 수행 과정 및 결과 학문 지도 구성원간 친화력 등	20	A~E
	대학 발전 기여도	교육 역량의 우수성 연구 역량의 우수성(impact factor 등) 발전 기여도(발전기금, 장학금 유치, 보직 등)	20	A~E
	소계		40	
	총점		100	

○ 평가 배점

방법	배점			항목
	30점	20점	15점	학과 지속 가능성(학과평가 결과)
A	30	20	15	상위 20% 이내
B	24	16	12	상위 40% 이내
C	18	12	9	상위 60% 이내
D	12	8	6	상위 80% 이내
E	6	4	3	-

【별표 6】

성과급적 연봉제 정년트랙 전임교원 호봉제 전환임용 심사 신청서

인적사항	소 속			
	현 직 급			
	성 명		생년월일	
임용사항	신규임용일			
	현 임용기간			
심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 일 시 : 20 . . 신청인 : (서명)				
우석대학교 총장 귀하				

【별표 7】

성과급적 연봉제 정년트랙 전임교원 호봉제 전환임용 신청자 자기평가서

제출일	20 . . .	소속		직급		성명	(서명)
항목	기술내용		내용 기술				
학과 지속 가능성	•최근 3년 학과의 신입생 충원율						
	•최근 3년 학과의 재학생 충원율						
	•최근 3년 학과의 취업률						
학과 공헌도	•학과 업무 수행 과정 및 결과						
	•학문 지도						
	•구성원간 친화력 등						
대학 발전 기여도	•교육 역량의 우수성						
	•연구 역량의 우수성						
	•발전 기여도						

【별표 8】

성과급적 연봉제 정년트랙 전임교원 호봉제전환임용 정성(면접) 평가서

평가구분	항목	내용	배점	방법	점수
정성 평가	학과 공헌도	• 학과 업무 수행 과정 및 결과 • 학문 지도 • 구성원간 친화력 등	20	A~E	
	대학 발전 기여도	• 교육 역량의 우수성 • 연구 역량의 우수성(impact factor 등) • 발전 기여도(발전기금, 장학금 유치, 보직 등)	20	A~E	
	소계		40		

- 신청자가 작성한 ‘자기평가서’를 바탕으로 평가 시행
- 평가척도

등급	A	B	C	D	E
배점	20	16	12	8	4

20 . . .

평가자 소속: 직급: 성명: (서명)